

제 13 장 양자간 협력

제 13.1 조 무역 및 투자 진흥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기업간 교류 및 협력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,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협력을 검토하고,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협력을 위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및 분야를 권고한다.

제 13.2 조 에너지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석유·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간 협력의 촉진
- 나. 원유의 전략적 비축·에너지 절약 및 대체연료개발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간 협력의 촉진, 그리고
- 다.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연구소 및 대학간 협력의 촉진

제 13.3 조 정보통신기술

1.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

관련 서비스에 관한 영업관행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, 양 당사국이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통하여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발전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정책 사안에 관한 대화 증진
- 나.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협력 증진
- 다.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포럼에서의 협력 제고, 그리고
- 라.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

3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·처리·관리·배포 및 거래
- 나. 제3시장에서의 영업기회, 그리고
- 다.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정

제 13.4 조 과학기술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과학자·연구원 및 전문가의 교류
- 나. 과학적·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
- 다.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의 교환
- 라. 기술정상회담을 포함한 세미나·심포지엄·회의 및 그 밖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
- 마.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활동 이행 및 그 결과의 교환
- 바. 과학기술활동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, 그리고
- 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협력

3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나노과학기술
- 나. 생명공학
- 다. 정보기술
- 라. 신소재
- 마. 고에너지물리학
- 바. 우주기술, 그리고
- 사.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

제 13.5 조 중소기업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,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협력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기법개발·기술 이전·품질개선·공급망연계·정보기술·자금조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간 협력 또는 우수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네트워킹 기회의 확립
- 나. 양 당사국간 투자 촉진
- 다.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지원, 그리고
- 라. 자국의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정책 및 사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토론·협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

제 13.6 조 인프라 및 운송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인프라 및 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이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고속도로·발전소·항만 및 공항 건설
- 나. 인프라 개발 및 산업공장 건설
- 다.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
- 라. 해상 운송,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

제 13.7 조 시청각 콘텐츠

1. 양 당사국은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방송·영화·애니메이션 및 게임¹⁾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청각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해하면서, 이 분야에서 당사국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일반적인 시청각 사안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 교환 증진
- 나. 양 당사국의 시청각산업간 협력 및 교류 증진
- 다. 방송프로그램·영화·애니메이션·게임 및 영상효과를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 촉진, 그리고
- 라.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시청각 행사에의 방문 및 참여 장려

3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되는 별개의 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인도의 정보방송부간 방송·영화·애니메이션 및 게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.

제 13.8 조 섬유 및 가죽

1) 게임은 우연의 결과로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치있는 것을 거는 도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 모두가 섬유 및 가죽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,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증진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그러한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제품개발·품질개선·패션·디자인 및 섬유공학 분야에서의 섬유 및 가죽 제품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 협력 촉진, 그리고
- 나.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

제 13.9 조

제 약

1. 양 당사국은 인류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제약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약초에 기초한 전통약품의 개발 협력
- 나. 복제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협력, 그리고
- 다. 의약품·임상실험·백신 및 혈액제품 분야에서의 국내규제에 관한 정보 교환

제 13.10 조

관 광

1. 양 당사국은 인적교류 강화가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개선하는데 중요하다는 점과 관광이 그러한 교류를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,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 활동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관광 인프라 및 시설의 개발 촉진
- 나. 문화관광 촉진

- 다. 여행알선 및 대행사·관광분야 언론인 및 그 밖의 미디어 대표자에 대한 사전답사여행 조직
- 라. 의료치료·국제회의와 컨벤션 및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양 당사국 간 관광객의 왕래 장려, 그리고
- 마. 관광 홍보 및 관측, 관광관련 입법, 생태관광 및 연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그리고 관광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

제 13.11 조

보건의료

1. 양 당사국은 인류보건의 중요성과 양 당사국의 현대 및 전통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식하고,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보건전문가 회의의 개최
- 나. 의학교육기관간의 프로그램 교환
- 다. 현대 및 전통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공유, 그리고
- 라. 예방약·치료약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공동연구

제 13.12 조

정부조달

1.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에서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정부조달 정책 및 규제체계에 관한 정보 및 견해의 교환 촉진
- 나. 축적된 지식·경험 및 정보의 상호 제공
- 다. 전자조달에 관한 지식·경험 및 정보 교환의 촉진, 그리고

라.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처의 지정

제 13.13 조 재생에너지자원

1.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에서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태양력·풍력·바이오 에너지 및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·고안 및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가. 정책 및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

나. 과학자·정책입안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교류

다. 공동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

라.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진, 그리고

마. 투자 및 합작 사업의 촉진

3. 비용 및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상호 합의에 따라 사례 별로 또는 프로젝트 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 13.14 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

제14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